

축산인의 세무상식 ③

국세 및 지방세 불복에 대한 구제의 길①

대 리 이 충 선

(서울우유협동조합 경리과)

사업을 경영하게 되면 각종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납부방법은 현행세법 대부분이 자진납부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즉 사업을 하였으면 익년 5월중에 종합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자진해서 하여야하고 부가가치세, 취득세, 인지세등 거의 모든 세금을 납세자가 알아서 자진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자기부과 제도이다.

이를 이행치 않았을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관서에서 본세 외에 가산세까지 추가하여 징수하게 된다.

그런데 각종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할 경우에는 세무관서(지방관서)에 불복청구를 하여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찾아야 할 것이다.

보통 납세자들은 처분을 받고서도 불복청구가 귀찮고 잘알지도 못하고 또 일제시대부터 내려오는 관공서에 대한 두려움과 보복등을 생각하는 납세자도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으로서 비용도 들지않고 이로 인하여 손해되는 것이 없으며 부당한 처분을 시정함으로써 정의 사회구현에도 보탬이 되며 세무업무도 자연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1. 국세 부과 처분에 대한 구제의 길을

규정한 현행법

가. 국세기본법 : 국세(소득세, 부가가치세등)에 대한 부당한 처분이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할 때에는 이법에 규정한 절차에 의하여 불복청구를 하게되며 첫번째로, 부당한 처분을 한 세무서(지방국세청)에 불복청구를 하는 “이의신청”

이 있고 두번째로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유없다고 청구기각 결정을 받았을때는 국세청에 재불복 신청인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세번째로는 국세청에서도 기각결정을 할때에는 재무부장관 소속하에 (국세청과는 별도임) “국세심판소”를 설치 운영하여 세금에 대한 초급법원의 기능을 하므로 여기에 불복신청인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나. 감사원법 :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청구와 별도로 감사원장에게 불복청구를 하는 제도이다.

다. 행정소송 :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청구나 감사원장에게 불복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을 경우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라. 민사소송 : 상기 불복청구는 일정한 기간 내에 청구를 하여야하나 그 불복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할수 없을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2. 지방세 부과 처분에 대한 구제의 길을

규정한 현행법

가. 지방세법에 의하여 재조사청구,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나.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3. 국세 불복청구절차 해설

가. 이의신청 : 이는 억울한 세금에 대한 불복청구의 첫번째 절차로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한 세금에 대하여 그 불복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

지방 국세청장에게 신청한다.

① 불복신청기간

㉞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고지서를 받을 때에는 그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안날의 익일 또는 받은날의 익일부터 계산)

㉟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세무당국이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할 기간 경과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㊱ 이의신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32호 서식)에 불복사유서 및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㉞ 결정판청은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 접수일로부터 30일 내에 그 결정이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㉟ 상기 결정기간내에 결정통지서가 없을 때에는 그 청구는 기각된것이므로 기다릴 필요 없이 다음 불복청구 절차를 준비 하도록한다.

③ 결정의 종류

㉞ 각하 :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불복청구를 하였거나 보정요구 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동일건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나 감사원 청구가 중복 제기된 경우

㉟ 기각 : 청구인의 불복사유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㊱ 취소결정 : 청구인의 불복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일부취소등)할 경우.

㊲ 기타결정 :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내용중 조사미비 또는 조사누락 사항을 다시 조사하여 그 결정에 따라 처분할 것을 결정하는 경우.

나. 심사청구 : 부당한 처분을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여도 청구 기각 결정을 통지 받았을 때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30일이 경과하여도 결정통지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심사청구서에 불복사유를 갖추어 처분을 받은 세무서를 거쳐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절차이며 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를 할

수도 있으며 이의신청을 거치는 것보다 시일이 상당히 단축된다.

① 심사청구기간

㉞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결정기간 만료일전에 받은 경우에 한함)

㉟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기간 즉 30일 또는 보정요구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에 보정기간을 더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나 또는 결정기간 경과후 통지를 받은 경우는 동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㊱ 이의신청을 생략하고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청구기간과 같다.

㊲ 심사청구서가 당초세무서장이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에 제출된 때에도 심사청구가 있는 것으로 한다. (81.12.31 개정)

㊳ 심사청구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 29호 서식)에 불복사유서등을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㉞ 결정판청은 국세청장으로서 세무서장이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있다.

㉟ 결정기한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기각된 것으로 본다.

다. 심판청구

국세청과는 별도로 재무부장관 소속하에 “국세심판소”를 설치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정당한 처분을 받지 못한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심판청구는 국세장에게 청구한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거나 그 결정에 불복하여 다시 불복청구하는 제도이다.

① 심판청구 기간 및 제출

㉞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결정기간 만료일전에 받은 경우에 한함)

㉟ 심사청구 결정기간 만료일 이후에 통지를 받거나 만료일이 경과하도록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심사청구 결정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㉔ 심판청구서 (시행규칙 제 35호서식)에 불복사유서등을 첨부하여 국세심판소장에게 하여야 한다.

㉕ 심판청구서는 당초 처분 세무서장에게 3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은 그 청구서를 국세청장을 거쳐 국세심판소장에게 송부한다.

㉖ 심판청구서와 국세청장의 의견서를 접수한 국세심판소장은 동 의견서 부분을 즉시 심판청구인에게 송부하며 당해청구에 대한 조사와 심리를 담당할 주심 국세심판관 1명과 배심 심판관 2명을 지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㉗ 청구인은 상기 ㉔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당해 심판관의 기피신청을 서면으로 할 수 있고 추가 의견서도 제출할 수가 있다.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㉘ 결정권자는 국세심판소장으로서 국세

심판관 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한다.

㉙ 결정기간은 세무서장이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이다.

㉚ 결정기간내에 통지를 하여야 하며 결정기간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본다.

③ 심판청구의 요건 및 심리

㉛ 심리할 사항은 경유기간, 경유절차, 적법여부, 심사청구, 이행여부, 청구기간 이행여부 등으로 심판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면 그 청구는 내용심리없이 각하 결정된다.

㉜ 내용심리 사항은 심판청구인, 처분청, 관계참고인에게 질문을 하며, 질문 대상자에게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요구, 검사 또는 감정 의뢰도 한다.

※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행정소송 민사소송과 지방세의 불복심사청구는 다음호에 게재한다.

(이하 59면에서 계속)

- ① 착유후 우유를 넣기 전에 냉각기를 가동시켜 확인한 후 저장시킬것.
- ② 냉각기내의 교반기가 고장이 없도록 보존관리에 힘쓸것. 교반이 안되면 냉각이 골고루 되지 않고 우유성분의 분리현상이 일어난다.
- ③ 아침에 냉각기내의 우유를 확인하며 전날 가동스위치를 넣는 것을 잊었을 경우에는 아침젖을 혼합하지 말고 따로 냉각시킬것. 전량산패 우려가 있다.
- ④ 아침젖은 저녁젖 냉각이 잘된 것을 확인한후 섞어서 빨리 냉각시키도록 할것.
- ⑤ 냉각기 효율화와 가동시간 단축을 위하여 표면냉각기(예비냉각)를 사용하면 더욱 좋다.
- ⑥ 우유 남유시는 냉각기로 교반을 충분히 시켜 완전혼합 되도록 할것.

- ⑦ 외부기온이 영하일지라도 반드시 냉각기 내부에 넣어 냉각시켜 10℃이하를 유지하도록 할것.
- ⑧ 우유가 얼면 지방이 높은 윗 부분이 얼어 우지방의 하락과 감량이 되므로 얼지 않도록 할것.
- ⑨ 착유시 유방세척용 형질을 깨끗히 빨아 일광소독을 수시로 할 것이며 자주 갈아서 사용할것.
- ⑩ 우물은 우사에서 떨어진 지역에 설치하고 오염되지 않은 물을 사용해야 한다.
- ⑪ 여과천은 자주 갈아주고 깨끗한 것을 사용하여 오염이 없도록 할것.
- ⑫ 착유후 유방꼭지 소독저를 사용하여 유방염 사전방지에 노력할것.
- ⑬ 냉각기, 착유기, 콕크등의 세척을 자주 하여 우유찌기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할것.